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년 11월 17일

나. 제출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2010년 11월 18일

## **4. 근거법령**

지방자치법(2010. 9. 17법률 제22377호)제139조 제1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 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22378호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구 해당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임

### **< 개정된 주요내용>**

- (1) 안 제3조 관련 별표 중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42종을 36종으로 감축하였고 그 사유는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1)세목별 납세증명과 (2)세목별 과세증명"을 "(1)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발급"으로 단일화하고 현행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실제로 무료로 발급되고 있거나 징수가 불가한 아. 회계관계 증명에서 (1)물품 납품실적증명, (2)공사 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증, (3)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증명, (4)물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 (5)보상금 지불 증명 등 총 7종이 폐지

(2) 안 같은 조 별표 중 2. 각 종 인. 허가 및 신고사항(66종)의 가목(29)“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로, 나목(12) “공유재산 대부(연장) 신청”을 “공유재산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으로, 같은 목(19)“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로, 수수료액 “3,00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가목(28)과 나목(17)(18)(22)(23)(34)(35)의 종목명칭에 “의”를 삽입

###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개정조례안은 2010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22378호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전국적 통일이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및 개정사항에 대하여 조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시달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수료 징수 통일기준이 현행 15종에서 12종이 추가 되어 총 27종이 개정되었으나 우리 구의 해당사무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지방세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발급 등 2종을 추가하여 총 17종이 개정되었으며 수수료징수 부과 근거가 미비하거나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종류에 대해서는 민원편의와 형평성제고를 위하여 폐지하였으며 관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